

『‘금천구체육회 회장 선출’을 위한』
선거인 및 피선거인 자격 안내

금천구체육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**선거인 및 피선거인**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▶ 선거권자: 회장 임기만료일 60일 전(12월 28일)까지의

대의원(구종목단체장), 구종목단체의 대의원

- 선거권자 중에서 선거인(투표권자)을 구성함

※ 금천구체육회 규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,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장(선거인명부의 작성)의 작성)

▶ 피선거인(후보자): 후보자 자격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임직원은 임기만료일 전 60일(12월 28일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

※ 금천구체육회 규정 제30조, 금천구체육회 규정 부칙 제2조제1항,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(1항~3항)

【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】

- 대한체육회(대한종목단체 포함), 시도체육회(시도종목단체 포함), 시군구체육회(시군구종목단체 포함), 읍면동체육회

붙임 1. 금천구체육회 규정 1부

2. 금천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. 끝.

※붙임의 규정은 금천구체육회 홈페이지 '규정' 메뉴 참고

금 천 구 체 육 회